



수신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경유)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행위제한 등) 관련 질의 회신

1. 강동구 주택재건축과-416호(2019.1.4.)와 관련입니다.
 2. 「201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중일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에 의거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협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에서 “기본계획을 공람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의 경우 행위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나.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신규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없으며, 정비계획 수립은 1단계 사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른 주민의견조사 이후 2단계부터 추진되는 것으로 상기 기본계획상 명시되어 있으므로, 행위제한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인 2단계 추진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 1단계(사전타당성 검토) → 2단계(정비계획안 수립) → 3단계(정비구역 지정). 끝.

서울특별시장

주무관	박정훈	조함운영전략팀장	유명은	주거정비과장	전결 01/10 진경식
-----	------------	----------	------------	--------	-----------------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45 () 접수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시재생본부 / http://www.seoul.go.kr
부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전화 02-2133-7238 /전송 02-2133-0758 / pjh66@seoul.go.kr / 대시민공개